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3회 임시회(2022. 3.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21
----------	-------

2022. 3.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환경과)
- 나. 제 출 일 : 2022. 2. 28.
- 다. 회 부 일 : 2022. 3. 4.

2. 제출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사항 및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을 개정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함.
-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충전자의 영업소 및 저장소로 구분하여 규정
- 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안 별표)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조문 삭제(안 제1조, 제2조 및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1) 입법예고 : 2022. 1. 27.~ 2. 16.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LPG)의 사업자가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는 내용과 액화석유가스¹⁾사업의 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의 정합성을 이루고자 제출됨.

나. 주요 조문 검토

- 조례제명은 기존 조례의 근거법령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된 세부허가 기준은 허가관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 고압가스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조례 제명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명확하게 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임.

1)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 석유성분 중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프로판, 부탄)가스를 상온에서 가압하여 액화한 것

- 안 제1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 안 제2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2015.1.28.)에 따라 기관에 위임된 사업의 허가 근거 조문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었음.
-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조례 개정 배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별표의 허가기준 세부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고려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저장소로 구분하여 부지 및 배치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자가 수출입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그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은 허가관청에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령의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삭제하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개정이므로 상위법령의 개정이 2015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개정 시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마포구 관내 도시가스보급률은 가정용과 영업용 등을 포함하여 2022년 현재 약203,500개소에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중으로 이는 99% 이상의 정도로 파악됨 (※마포구청 환경과 자료)

<표 1. LP가스 판매업소>

연번	업소명	위치	허가일
1	신대양가스	만리재로1길 5	1975.2.1
2	용산합동가스	만리재옛길 80-1	1991.2.8
3	24시가스	서강로 16길 17	1991.3.7
4	삼화가스	백범로84	1981.9.23
5	대성제일가스	토정로 51-1	1981.7.24
6	서울가스	포은로 83-1	1975.5.21
7	영풍가스	방울내로3길 31	1981.4.27
8	삼일금성가스	성산로2길 17	1981.1.24

[관 계 법 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나.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다.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